

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8. 19.

담양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건축법 시행령」에서 공동주택 화재피해 방지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의무적 설치를 규정함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대상사업에 포함하고, 과도한 인감 증명 요구사무 정비요청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사업 계획서” 제출시 인감 증명서가 아닌 신분증을 첨부하도록 하며,
- 구조적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화재 피해 방지 및 비상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방시설 설치·개선
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제8호)

- (추가) 8.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소방시설의 설치·개선

※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의무 설치
규정을 근거로 함.

나. 보조금 지원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4항)

- 구조적문제, 안전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비가 과다
하게 소요되어 순차적으로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자부담 비율 조정가능 조항 삽입

- (개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부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 행전안전부의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에 대한 정비(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붙임))

- (현행) 인감증명서 ⇒ (개정) 신분증

4. 입법예고 기간 : 2025. 8. 19. ~ 8. 24.(5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
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7~8(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서식

의견서		
1. 조례안	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견	관련조문	의견
3. 기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8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소방시설의 설치·개선

제7조제4항 중 “다만, 총사업비가 5백만원 이하인 단지의 경우에는 자부담을 아니 할 수 있다.”을 “다만,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부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으로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붙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계획서 중 “인감증명서”를 “신분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사업) ① 담양군 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 7. (생략) <u><신설></u> 8. (생략) ② ~ ④ (생략)	제4조(지원대상사업) ①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소방시설의 설치·개선</u>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결정 및 정산) ① ~ ③ (생략) ④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70~95% 범위 안에서 세대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지원상한액은 6천만원으로 한다. <u>다만, 총사업비가 5백만원 이하인 단지의 경우에는 자부담을 아니 할 수 있다.</u> 1. ~ 4. (생략) ⑤ ~ ⑫ (생략)	제7조(지원결정 및 정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u>다만,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부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u> 1. ~ 4. (현행과 같음) ⑤ ~ ⑫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붙임)】

붙임)

(뒷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계획서

1. 공동주택 현황

- 공동주택명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동수 및 세대수 : 동 세대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보조 사업명 :
○ 보조사업의 목적 :
○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보조금	자부담	
				설계도서 설계도면 등 첨부
계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과 방법 :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 첨부
○ 보조사업의 효과 :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

신청인(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

㉑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붙임)】

붙임)

(뒷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계획서

1. 공동주택 현황

- 공동주택명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동수 및 세대수 : 동 세대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보조 사업명 :
○ 보조사업의 목적 :
○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보조금	자부담	
				설계도서 설계도면 등 첨부
계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과 방법 :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첨부
○ 보조사업의 효과 :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

신청인(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

㉑